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예
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 수]
    B --> C["서류 확인 및  
검토"]
    C --> D[결 재]
    D --> E[결과 통지]

```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